

농업발전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 주길



정 형 기
(본회 무안지부장)

건국이래 처음으로 신설된 농어촌발전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농업은 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 밀려 소외당하고 짓눌려 왔다.

이처럼 농업천시의 풍조속에 방치된 농업을 갑자기 문을 열고 선진국들의 농업과 경쟁해보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김일(레슬링선수)과 한 판 붙어보라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살려 민족의 생명창고를 지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사명이요 책임이다.

이러한 막중한 시기에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관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의미있고 막중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UR의 재협상과 국회비준 거부 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진언하여야 한다.

팔이 부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니 부러진 팔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부러진 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논의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팔이 부러지지 않겠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잘못된 UR협상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회비준동의를 거부하고 부결시키는 길밖에 없다.

둘째, 농업은 선택산업이 아닌 필수산업, 생명산업임을 진언해야 한다.

한 나라의 농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정책결정자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정책결정자의 농업관이 천박하면 찬밥신세로 전락하고 올바르게 대우를 받는 것이다. 김대통령께 바른 농업관을 피력해야 한다. 먹을거리가 농업에서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과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홍수방지와 수자원 함양, 대기 정화, 토양유실 방지, 환경보호, 지역방위, 국민경제 균형유지, 휴식공간 제공, 도시화 억제 등 엄청난 비경제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식량창고를 남의 나라에 내주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것이 그 나라에 종속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농업 이외의 모든 산업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공해를 일으키며 언젠가는 바닥이 나지만 농업은 지속가

능한 유일무이한 산업임을 알려 주어야 한다.

셋째, 농지확보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충분한 농지의 확보와 함께 경자유전의 실현이다. 현 정부는 전체 농지의 48.2%만 농지로 보존하고 나머지 농지는 전용하여 타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농지의 대폭적인 축소정책과 함께 세계 어떤 나라도 포기하지 않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포기하고, 도시자본가들도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농지거래의 자유화를 허용해버렸다.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의 농업포기정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전 농토의 농업진흥지역 고시와 함께 경자유전의 원칙을 사수해야 한다(통일을 대비해서).

넷째, 재벌들의 식품가공을 규제하고 생산농민과 생산자단체만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농업생산 기반을 정비해 주어야 한다.

모든 전답의 경지정리와 농로의 포장, 전천후 수리시설을 시급히 완수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양돈인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돼지고기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시켜 주어야 한다.

배합사료원료 전체를 수입하여 양축하는데 고기마저 수입해 온다면 한 마디로 망할 수밖에 없다. 냉

장육이나 냉동육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수입 쇠고기의 방출량에 의하여 돼지값이 좌우되었는데 '95년엔 냉동육 수입 쿼타량이 21,930톤이나 되어 양돈농가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이 쿼타량은 광주, 전남 시도민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3%만 남아도 폭락하고 3%만 모자라도 폭등하는데 3%의 의무수입량은 양돈농가를 확실하게 망하게 하는 엄청난 양이다.

둘째, 불가피하게 수입할 때는 수입권한을 생산자단체에게만 위임토록 해야 한다.

수입을 억제하는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마지 못해 수입하게 될 때는 생산자단체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관세와 판매이익을 모두 양축농가에 환원하여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셋째, 양축농가의 안정을 위한 자금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때 상호 유대강화와 생산농가의 의욕고취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축산기자재 및 배합사료 관세의 영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의 전면 폐지를 건의해야 한다.

다섯째,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직판장 개설과 즉석 제조·가공(햄 및 소시지)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보조 및 융

자) 주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어도 담보물건 부족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조합원의 상호연대 신용보증만으로도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우고기 전문직판장 지원자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돼지고기도 전문직판장(부위별 판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시설개선자금의 거치기간을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이자 또한 이웃 일본이나 대만처럼 3% 이하로 인하해 주도록 해야 한다.

'90년부터 축산농가에 지원한 시설개선자금이 '94년부터는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데 현재의 돈가로는 이자 갚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수입개방을 앞두고 가뜩이나 불안해 하고 있는 양축농민들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담보된 토지마저 잃게 된다면 우리 축산업의 앞날은 보장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으로 담보한 부모, 형제, 처가에 까지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거치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를 통하여 축산농민의 사기를 진작하여 국제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찬 박수와 함께 채택을 가해 주시기 바란다. 